

공고 제 호

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

「도로법」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도로관리청

직인

도로의 종류		노선명	
점용의 목적		점용기간	
점용의 장소		점용면적	
점용물의 종류		공사기간	
공사 방법		굴착 시 교통대책	
도로의 복구방법		도로굴착	
점용자의 주소·성명		그 밖의 사항	